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07. 7.



보건복지부

목 차

I.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II.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	3
III. 향후 과제	6
참고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8

I.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보험료율 : 현행 9% 유지
- 급여율 : 현행 60% → 50%('08) → 40%('28) (매년 0.5%씩 인하)

□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급여수준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5%('08) → 10%('28)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의 60%('08) → 70%('09)
- 부부감액 : 부부 동시 수령 시 각각의 지급액에서 20%씩 감액
- 병급조정 : 공적연금과 병급조정 규정 삭제(동시 지급 허용)

※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08.1 부터)

-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소요재원대책과 급여상향조정시기와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개선 논의

□ 국민연금 제도개선

- 출산크레딧 제도의 시행('08.1.1이후 출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자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 추가 (최장 50개월까지 인정)
 - 추가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로 산정
 - ※ 2자녀 출산시 월23천원, 3자녀 출산시 월 57천원 노령연금 인상효과 발생
 -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기회를 증대시켜 연금사각지대 축소
- 군복무 크레딧제의 시행으로 병역의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려
 - 병역의무 이행자('08.1.1이후 입대자, 병·공익근무요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추가 인정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1/2로 인정
 - ※ 노령연금액이 약 월 9천원 인상되는 효과 발생

○ 노령연금·장애연금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 장애연금을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해 왔지만, “가입 전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로 변경

※ 미완치 상병의 장애결정 유보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였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

※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사유 발생시, 개정법에 의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유족연금액의 20%를 함께 받음

※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중 본인의 반환일시금이 발생한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전액받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 구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 20년 미만 가입자의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을 2.5% 상향조정

※ 47.5%(10년) ~ 92.5%(19년) → 50%(10년) ~ 95%(19년)

○ 고령 근로친화적 급여제도로 개편

- 연기연금제 도입 :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 조정

※ 1회 한하여 연기,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 가산지급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이후 소득활동 종사시 재직자 노령연금 적용

※ 현재 65세 이전 소득활동 종사시 조기노령연금 급여 정지 → 60세 이전에는 현재처럼 정지,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지급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율을 하향조정 (75%→70%), 감액폭을 확대(5%→6%)하여 고령 근로활동 유인

○ 급여 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

II.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

□ 정치적·역사적 의미

- 지난 3년여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통하여 주요 정당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의를 지님
- 또한 연금기금 고갈로 인한 세대간 갈등, 사회적비용 등 시행착오를 거친 외국과 달리 기금형성 단계에서 개혁하였으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모범사례임

□ 재정안정화 측면

- 기금소진 시점을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함으로써
 -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없이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가능
 - ※ 개정 전의 보험료, 급여율 조합 유지 시 미래세대는 '50년에는 소득의 30%, '70년에는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지급해야 함
 -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완화
-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인상에 거부감이 높다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
 - 급여율 인하만으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므로 다소의 한계는 존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건의('03)】

- 2070년 목표적립율 2배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대안 제시
- ① 급여율 50%, 보험료율 15.85% ⇒ 정부안으로 결정·추진
- ② 급여율 60%, 보험료율 19.85%
- ③ 급여율 40%, 보험료율 11.85%
- ※ 국회 본회의 부결된 당초 개혁안
 - 급여율 50%, 보험료율 12.9%

□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

- 국민연금 급여율은 '08년 50%, 그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8년에 40%에 도달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 가입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거의 급여율 적용)
- 또한 급여수준은 20년에 점차적으로 조정되므로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발생하지 않음
- 신규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 : 8~9만원('08) → 54만원('28) 지급(경상가 기준)

<30년 가입시 연금액 비교(기초노령연금 제외)> (단위 : 만원)

기준 소득	2008년 기준										비 고
	기준 20년 향후 10년 (18년 수급자)		기준 15년 향후 15년 (23년 수급자)		기준 10년 향후 20년 (28년 수급자)		기준 5년 향후 25년 (33년 수급자)		신규 30년 (38년 수급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360	126	117	123	110	121	101	121	94	121	88	
300	112	105	110	98	108	90	107	84	107	78	
250	101	94	99	88	97	81	96	75	96	70	
200	90	84	87	78	85	71	85	66	85	61	
180	85	80	83	74	81	68	80	63	80	58	
150	78	73	76	68	74	62	74	57	74	53	
100	67	63	65	58	63	53	62	49	62	45	
50	50	50	54	48	50	43	51	40	50	37	

※ 개정 시점은 2008년이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

※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산식에 의해 단순계산

-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도 낸 것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음
 - 민간의 개인연금보다 높은 수익비 보장,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비 시현 (붙임 자료 참고)

<소득수준별 수익비>

가입연도	소득별			
	구분	50만원	159만원 평균소득('05)	360만원
1988년	현행	4.4	2.7	2.0
	개정	4.4	2.4	1.7
1999년	현행	4.1	2.4	1.7
	개정	4.0	1.9	1.4
2008년	현행	4.2	2.5	1.8
	개정	3.7	1.8	1.3
2028년	현행	4.2	2.5	1.8
	개정	3.6	1.7	1.2

- 한편 급여수준 하락은 보험료인상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룬데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

< 주요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수준 >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소득대체율	40%	48%	25%	50%
보험료율	12.4%	19.5%	9.9%	14.62%

□ 연금사각지대 해소

-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향후 급여액 인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될 때까지 **현 세대 노인빈곤을 상당수준 완화할 것으로 전망**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301만명('08) → 363만명('09)

- 또한 급여부분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잠재적 연금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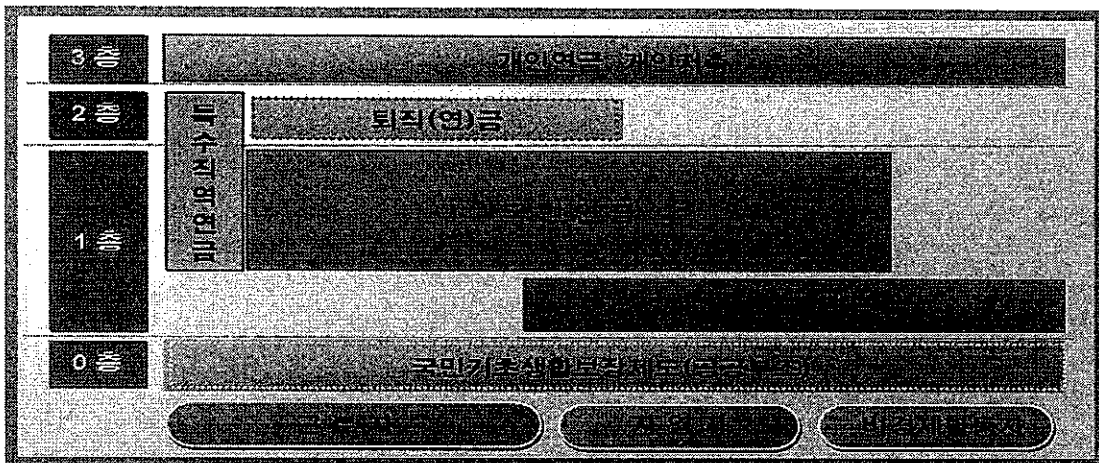
- 출산크레딧제도 도입(12개월), 군복무 크레딧(6개월),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장애결정유보기간 단축, 장애연금 수급조건 완화 등), 분할 연금 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감액노령연금액 지급을 상향조정 등

Ⅲ. 향후 과제

□ 공적소득보장의 역할 정립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초고령화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함
 -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
 -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적부분의 연금제도 활성화를 도모
 -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 여건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해야함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예시>



□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 국민연금 급여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에 따라 실질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증대 대책 추진
-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정착을 도모하고,
 -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기간 및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기간에 대하여 크레딧 확대방안 모색을 지속
- 범정부적인 자영자 소득과약 강화와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지속적 추진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적용사업장 규모가 미미
 - 제도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금 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 필요
 - ※ 퇴직연금 현황
 - '07.5현재 19,928개소(대상사업장의 4%), 29만 여명 가입
- 자영자의 경우 2층, 근로자의 경우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되,
 - 자산저축수단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토록 유도
 - ※ '01년 말 개인연금 세대가입율(건수/전체가구수)은 25.6%로 추산(사회보장학회)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 분석방법

- 소득수준 : 22, 50, 100, 159(A값), 200, 300, 360만원 소득자 각각 분석
- 가입기간 : '88년 '99년 '08년 및 '28년 신규 가입자 40년 가입 기준
- 수급기간 : 연금수급개시부터 평균수명까지 18년간 연금수령 가정

□ 소득수준별 수익비

가입연도	소득별 구분	22만원 (최하위)	50만원	100만원	159만원 (A값)	200만원	300만원	360만원 (최상위)
1988년	기존	4.4	4.4	3.6	2.7	2.4	2.1	2.0
	개정	4.4	4.4	3.2	2.4	2.2	1.8	1.7
1999년	기존	4.1	4.1	3.1	2.4	2.2	1.9	1.7
	개정	4.1	4.0	2.4	1.9	1.7	1.5	1.4
2008년	기존	4.2	4.2	3.2	2.5	2.2	1.9	1.8
	개정	4.2	3.7	2.3	1.8	1.6	1.4	1.3
2028년	기존	4.2	4.2	3.3	2.5	2.3	1.9	1.8
	개정	4.2	3.6	2.2	1.7	1.5	1.3	1.2

※ A값 159만원은 '05년말 기준

□ 분석결과

- 전반적으로 수익비 저하
 - 가입연도가 늦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수익비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
 - 반대로, 기존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수익비 감소폭이 둔화되며, 특히 저소득층은 수익비 감소가 미미함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비 유지
 - 법개정에 따른 수익비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계층에서 1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비를 유지

□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이유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개인연금은 약정된 명목금액을 지급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 수급시점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므로 수급자에게 매우 유리함

○ 연금의 종신지급

- 개인연금은 통상 약정된 기간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 국민연금은, 나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증대되어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급자의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지급하므로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

○ 장애, 유족연금 등 지급

- 국민연금은 별도의 특약 보험료 없이 가입 중 장애·사망에 대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중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함

○ 관리·행정비용 절감

- 개인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인건비·물건비 등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마케팅비가 상당히 소요되나,
-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공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기기 않으며, 의무가입이므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행정비용이 절감되어 그만큼 더 가입자에게 유리함